연 장 근 로 합 의 서

사업장명		대표자	
근로자 성명		부서·직위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에 합의한다.

제1조 (연장근로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연장근로 시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사정에 따라 정하며, 1주 최대 시간으로 한다.

제3조 (연장근로 수당)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매월 일 정기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제4조 (근로시간 기록)

연장근로 시간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하며, 근로자는 매월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근로자는 건강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리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인)

근로자	주소	
	연락처	
	성명	(인)

폼보따리 (formbottari.com) 무료 양식 ·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용·수정에 따른 결과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